



한의학의 미래, 의료의 미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Seoul Korean Medicine Association

수 신 분회장
 (경유) (사무국장)
 제 목 의료인의 경력 및 자격 표기 관련 회원 주의안내 협조 요청

한약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2025-05-0121(2025.5.23.)
3. 중앙회는 최근 양의사들이 한의사가 개설한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속 의료인의 경력 및 자격 표시 관련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약력에 대하여 불법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고소·고발 조치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필히 의료법령을 준수하여 광고를 게재해야 하는바, 의료인의 약력에 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및 6개월 이하의 임상 경력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어 위반 시 행정처분(시정명령·업무정지 등) 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소속 회원들에게 홈페이지상 기 광고된 내용을 점검하여 상기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즉시 삭제 또는 수정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분회 회원분께 적극 주의·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끝으로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소속 회원에게 피해사례 발생 시 제보 및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중앙회 의료광고심의팀(☎ 02-2657-5030, 5037, 5039, 506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국장 윤상환 처장 김태준 협조

서한의 - 제 86 호 (2025.05.23.)

우)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6 테헤란오피스빌딩 206 / 홈페이지 : <https://www.skma.or.kr>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화 : (대)02-960-0811 / 팩스 02-6944-8075 / E-mail : skma@skma.or.kr